

#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8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11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개정이유

- 공유재산 심의대상 가격기준 조정, 전물 옥상대부료 산출근거 규정을 신설하고,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어긋나는 조문을 정리, 공유재산 감정 평가 의뢰대상을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(규제개선)

## 주요내용

- 공유재산심의 생략대상을 수의매각 대상 재산가격과 같게 하여 매각절차 간소화(안 제4조)
- 전물 옥상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산출근거 규정 신설 (안 제29조)
-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 사항 반영 및 기타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규정을 법령과 일치시키고, 용어를 정비함  
(안 제25조, 안 제29조, 안 제36조, 안 제37조, 안 제63조)
- 공유재산의 감정평가 의뢰대상 확대로 규제개선(안 제63조)

## 개정조례안 : 붙임

##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##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16조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의2, 제27조, 제31조
- 「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-행정안전부고시 제2016-50호」
- 「현행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조례」 (전문)

##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사전예고 : 해당없음

- 입법예고 : 2017. 9. 19. ~ 10. 10. (20일간)

## 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#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 중 “토지”를 “토지의 취득·처분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 중 “2천만원”을 “3천만원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4호 중 “2천만원 이하의 행정재산·일반재산”을 “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4조의2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관련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공무원은 회계, 예산, 도시계획, 건설업무주관부서장으로 한다.

제25조제3호 중 “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공유재산”을 “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”으로 한다.

제29조제3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물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.

제36조제3항제4호 중 “아파트형공장용지”를 “지식산업센터용지”로 한다.

제37조제2호 중 “아파트형공장 안의 재산”을 “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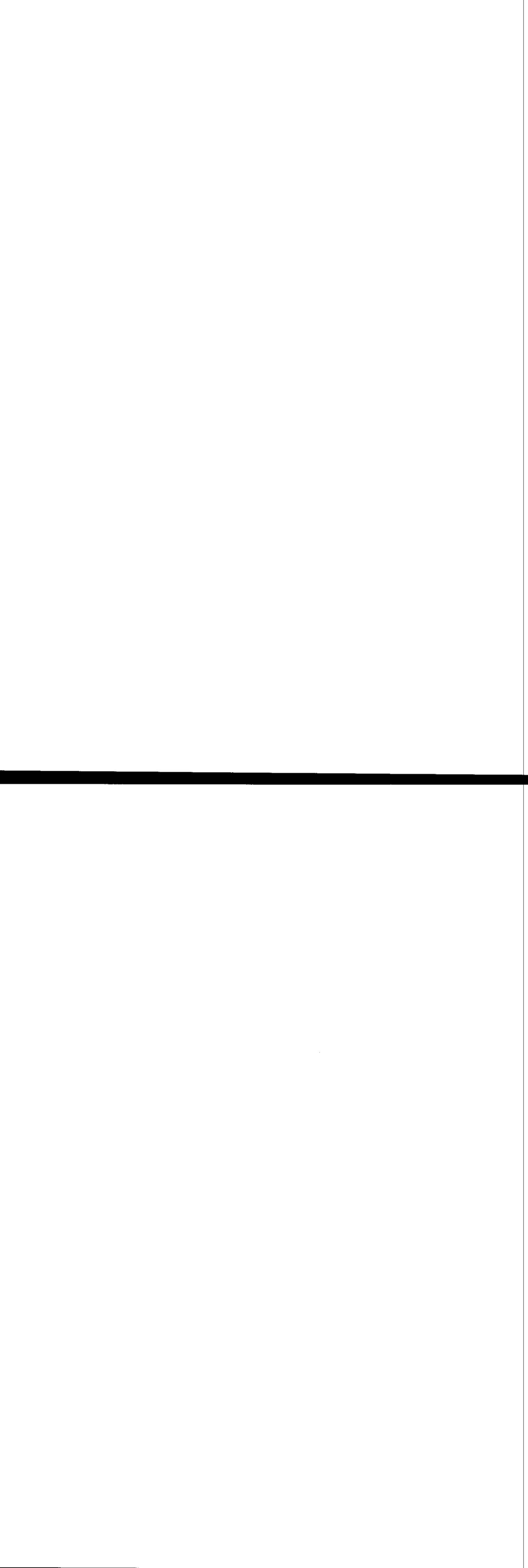
제63조 후단 중 “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”을 “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업자”로 한다.

- 2 -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회 계 과
입 안 자	관·과·소장 직위·성명	회계과장 김종철
	담당 직위·성명	재산관리팀 서정아
	담당자 성명(전화)	김대왕 (2175)



# 신·구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~ ③ (생 략)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「건축법」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<u>토지</u></p> <p>3. 대장가액 <u>2천만원</u> 이하 재산의 취득 · 처분</p> <p>4. 66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 또는 대장가액 <u>2천만원</u> 이하의 행정재산 · 일반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</p> <p>제4조의2 (심의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④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 신 설 &gt;</u></p>	<p>제4조(공유재산심의회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..... .....<u>토지의 취득 · 처분</u></p> <p>3. ....<u>3천만원</u>..... ....</p> <p>4. ..... <u>3천만원 이하의 공유재산</u>..... .....</p> <p>제4조의2 (심의회의 구성)</p> <p>① ~ 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⑤ 관련 직위로 인하여 위촉되는 시 소속 <u>공무원은 회계, 예산, 도시계획, 건설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한다.</u></p>
<p>제25조 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· 매각 대상 등) 1. · 2. (생 략)</p> <p>3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<u>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</u> 승인된 공유재산</p> <p>4. ~ 6. (생 략)</p> <p>제29조 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</p> <p>① · ② (생 략)</p> <p>③ (생 략)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신 설&gt;</u></p> <p>④ · ⑤ (생 략)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	<p>제25조 (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· 매각 대상 등) 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..... .....<u>지식산업센터로 설립</u> 승인된 공유재산</p> <p>4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9조 (건물대부료 산출기준)</p> <p>① ·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물옥상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.</u></p> <p>④ ·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6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</p>

현 행	개 정 안
① · ② (생 략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 )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<u>아파트형공장용지</u> 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, 「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,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	4..... ..... <u>지식산업센터용지</u>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
5. (생 략)	5. (현행과 같음)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<b>제37조(조성원가 매각) ( 생 략 )</b>	<b>제37조(조성원가 매각) ( 현행과 같음 )</b>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아파트형공장</u> 안의 재산	2. 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<u>지식산업센터</u> 안의 재산
3.~4. (생 략)	3.~4. (현행과 같음)
<b>제63조(공유토지의 분필)</b> 시장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 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, 이를 위한 평가는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한다.	<b>제63조(공유토지의 분필)</b>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..... <u>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</u> <u>에 따른 감정평가업자</u> .....